
DAY N NIGHT 야외갤러리 조성 용역 과업지시서

|| 목 차 ||

I . 과업개요

1. 과업명
2. 과업기간
3. 과업금액
4. 과업목적
5. 계약방법
6. 과업의범위
7. 과업내용

II . 과업세부내용

1. 기본계획 및 방향
2. 과업 세부내역
3. 보고회 및 보고서 작성

II .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2. 과업의 세부지침

DAY N NIGHT 야외갤러리 조성 과업지시서

1 과업 개요

1. 과업명 : DAY N NICHT 야외갤러리 조성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4. 4. 15.
3. 과업금액 : 금600,000,000원(금육억원) ※부가세포함
4. 과업목적
 - 가. 통합브랜드 디자인을 응용한 야외갤러리 조성으로 개항희망문화상권의 넓은 권역과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상권을 하나의 이미지로 브랜딩할 수 있도록 추진
 - 나. 개항희망문화상권을 관광할 수 있는 길(선)을 따라 거리가구, 경관조명 등의 연출로 장소성을 나타낼 수 있는 야외갤러리 조성
 - 다. 예술성과 실용성을 갖춘 새로운 개항희망문화상권 관광 루트 조성으로 방문객 이용 편의 제공
 - 라. WayFinding(물리적인 공간에서 스스로 위치를 찾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모든 방법) 방법을 이용하여 약 390,789㎡(1,174개 점포)의 상권을 고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마. 개항희망문화상권 거리디자인, 스트리트퍼니처, 웨이파인딩 사업 등의 디자인 개발 및 제작·설치를 통한 통합상권 이미지 제고 및 환경개선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6. 과업의 범위
 - 가.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중구 개항희망문화상권 일대
 - 나. 내용적 범위
 - 개항희망문화상권의 주요 거점 공간 야외갤러리 조성
(신포권역, 개항장권역, 차이나타운권역 3개 상권의 거점 선정)



DAY N NIGHT 야외갤러리 조성사업 대상지

- 개항희망문화상권 전역에 공통적인 적용으로 통합이미지 구축
 - 안전한 경관 조성으로 통합상권 인지도 향상
 - 타 공공시설물과 함께 조화롭게 설치해 길찾기의 포인트 역할
 - 디지털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으로 각종 이벤트, 프로그램의 홍보
 - 환경시설물, 거리가구 등 디자인 실시설계 및 설치 공사
 - DAY N NIGHT 야외갤러리 조성 완공식
 - 구조적 안전성, 경관심의 등 관련 인허가 진행
 - 사업 대상지 현황조사 및 주요 사업구간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 등을 통한 전략수립, 시행계획 도출 등
 - 거리디자인, 스트리트퍼니처, 웨이파인딩 사업의 디자인개발, 기본설계, 실시 설계를 포함한 디자인 계획 및 설계 구상·제시 후 제작 및 설치
 - 디자인 개발 및 설계에 따른 각종 인·허가, 심의 등 관련 도서 작성에 수반되는 제반사항 이행 및 업무협조 지원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목적 달성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DAY N NIGHT 야외갤러리 조성 사업의 장소 및 내용은 지자체 등 관련 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기본계획 및 방향

- 통합브랜드 신나장과 신나프렌즈를 활용한 거리이미지 연출
- 신포국제시장~개항장~차이나타운~송월동 동화마을을 연결할 수 있는 웨이파인딩시스템 개발
- 누구나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레지블(legible) 사인 조성
- 스톱비(smartphone zombie), 지도 app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안내 체계로 지속 가능한 안내체계 구현을 위한 방안 고려
- 가로 비우기를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거리가구 또는 가로시설물과의 통합방안 고려
- 불법 또는 무단 주차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방안 개발
- 고객의 상권 이용 편의성을 향상하는 서비스 디자인 개념의 안내체계 연계 개발
- 통합 디자인 아이덴티티와 각 권역이 가진 장소성을 반영한 스트리트 퍼니처와 가로시설물 조성
- 가로를 이용하는 차량, 보행자 등 이용자의 이용 행태, 공간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이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긍정적 경험 조성
- 분전함 등 기존 시설물의 커버링, 웨이파인딩사인과의 통합 등 경관을 개선하고 기능시설물의 점유를 최소화하는 방안 적용
- 보편적 이용자와 사회적 약자 등 이용자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 design) 개념을 적용
- 관련 조례 등 관련 법규 및 법률 검토(공공디자인, 경관디자인 포함)
- 국내 및 해외 경관 관련 우수사례 및 시사점 도출
- 발주처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 등을 통해 세부 내용 반영
- 사업완료 이후 유지관리 및 운영방안 매뉴얼 제작
- 공간조성 시 안전교육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철저

2. 과업 세부내역

2.1 전체 배치 예상도



2.2 거점별 야외갤러리 조성 : 상권 내 3개소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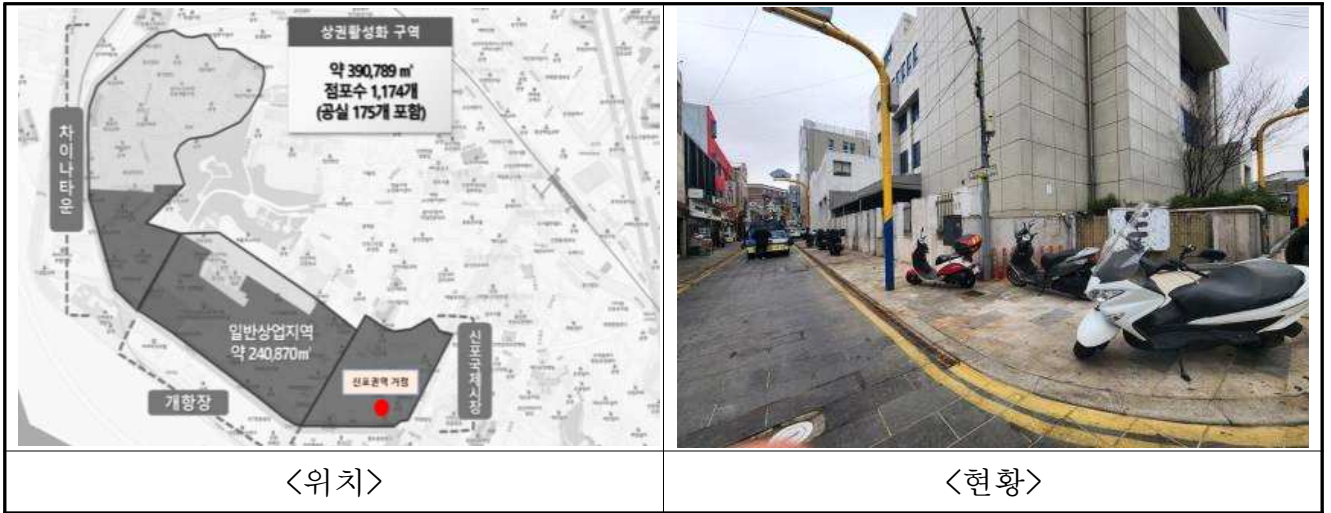


- 야외갤러리 거점별 위치

- 차이나타운 거점 :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로 (황제의 계단 좌측, 보행자 계단)
- 개항장권역거점 : 인천 중구 신포로27번길 (인천 중구청 인근)
- 신포권역거점 : 인천 중구 우현로35번길 (하나은행 인근)

가. 신포권역 야외갤러리 조성

- 위치 : 인천 중구 우현로 35번길 (하나은행 인근)
- 대상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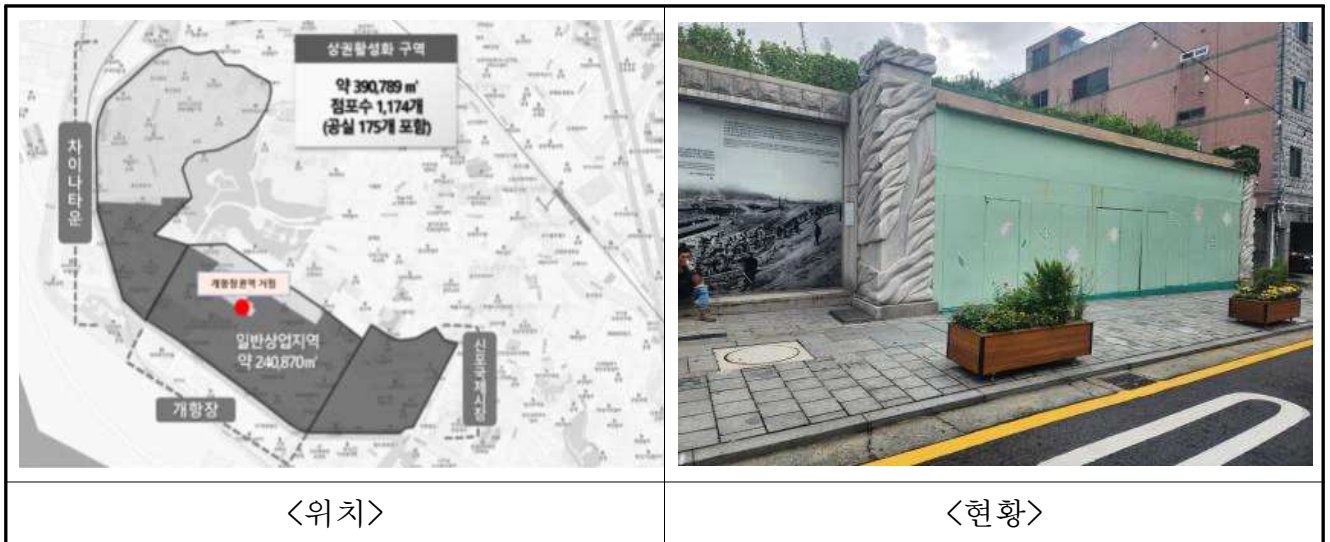
○ 주요과제

- 제물량로 입구부터 하나은행 담장을 따르는 ‘ㄴ’ 자 형태의 공간(주차장 입구까지)을 고객과 상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갤러리로 조성
- 주변 경관조명(중구 일자리경제과 설치 예정)을 고려한 디자인
- 공연이 가능한 인근 야외무대와 조화를 이루며 개항희망문화상권의 장소성을 활용한 이색적 포토존 조성



나. 개항장권역 야외갤러리 조성

- 위치 : 인천 중구 신포로 27번길 (인천 중구청 인근)
- 대상지 현황



○ 주요과제

- 인천 중구청 앞길 가벽 설치 구간 야외갤러리 조성
- 주변 보행자 도로 거리가구 조성
- 주변 공간과의 맥락(context)을 고려한 장소성을 담은 공간 조성
- 보행자의 이동 행태와 무단차보행로의 특성을 이해하고 기능적 여건을 충족하는 스트리트퍼니처조성



다. 차이나타운권역 야외갤러리 조성

- 위치 :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로 (황제의 계단 좌측, 보행자 계단)
- 대상지 현황(본 대상지는 변경 또는 추가될수 있습니다)

<p><위치></p>	<p><현황></p>

- 주요과제
 - 차이나타운 보행자 계단 주변 야간 경관개선을 통한 야외갤러리 조성
 - 현재 조각이미지와 야간 주민 동선을 고려한 조명 디자인
 - 차이나타운 주변 분전함 등 공공시설물 통합 개선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차이나타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되 정돈된 경관 연출



2.3 주요동선에 따른 통합브랜드 거리 가구 디자인 적용 및 제작·설치

주요동선(1) 신포국제시장 - 누들플랫폼- 인천시 중구청 - 차이나타운 - 동화마을



특징

- 신포국제시장 : 동인천역에서 시작되어 개항희망문화상권을 처음 만나는 곳
- 누들플랫폼: 인천에서 최초로 개발된 짜장면과 쫄면 등 누들의 역사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곳
- 차이나타운 : 1884년 청나라 조계지에 삼국지 거리 등 중국대표문화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곳
- 동화마을: 2013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고전동화를 테마로 조형물과 벽화 조성

보완점

- 신포국제시장에서 동화마을까지 연결을 인지할 수 있는 안내 표식
- 누들플랫폼, 개항장 주변 보행을 방해하는 주차 문제 해결
- 기타 제안사의 제안에 따른 추가 시설 제안

주요동선(2) 신포국제시장 - 개항누리길상점가 청실홍실 - 근대건축전시관 - 짜장면박물관 - 차이나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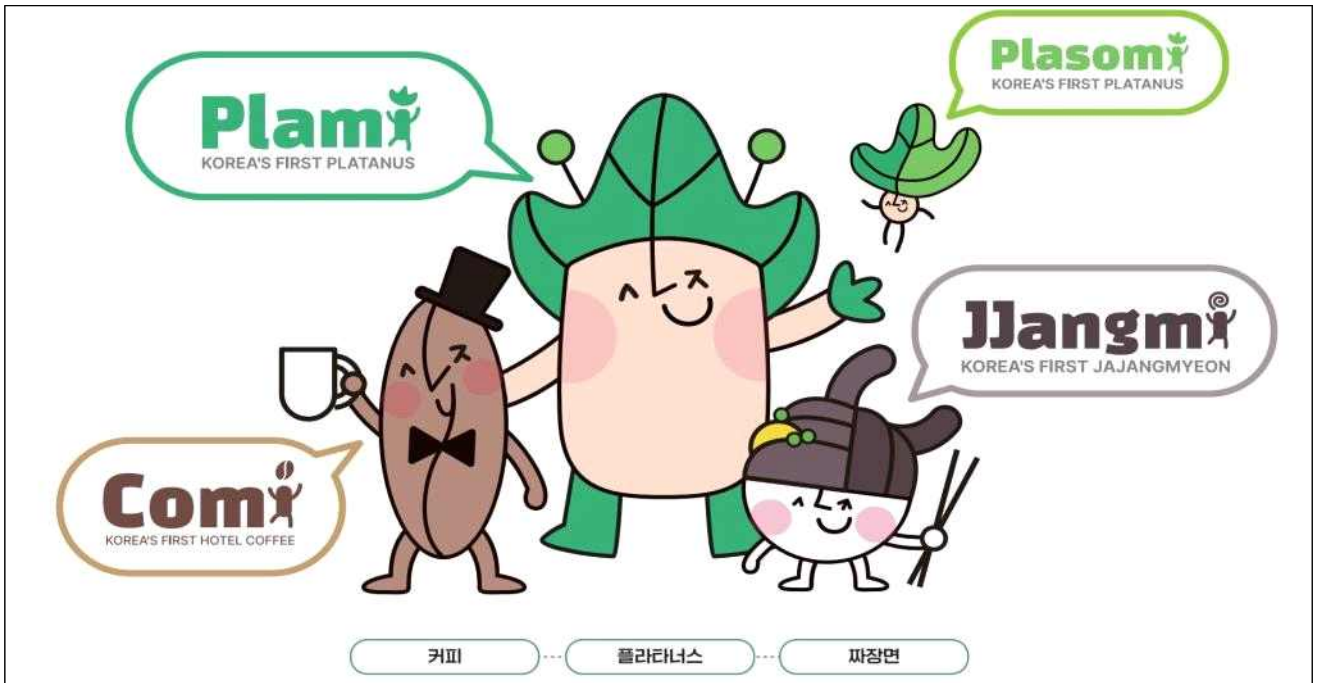
특징

- 개항누리길상점가 청실홍실 : 메밀국수 맛집 야외쉼터로 작은 공연이 이루어지는 곳
- 근대건축전시관 : 구)일본 제18은행 인천지점으로, 현재는 근대건축물과 관련된 자료를 전시하고 있음
- 대불호텔전시관 : 조선 최초의 호텔로 근대 호텔의 모습과 생활사 전시관이 있음
- 차이나타운 : 1884년 청나라 조계지에 삼국지 거리 등 중국 대표 문화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곳
- 동화마을 : 2013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고전동화를 테마로 조형물과 벽화 조성

보완점

- 역사문화와 함께하는 상권의 이미지 홍보
- 문화재 구역으로 시설물 배치 보다는 디지털 사이니지 필요
- 개항누리길상점가 청실홍실 인근 불법 주정차근절을 위한 시설물
- 기타 제안사의 제안에 따른 추가 시설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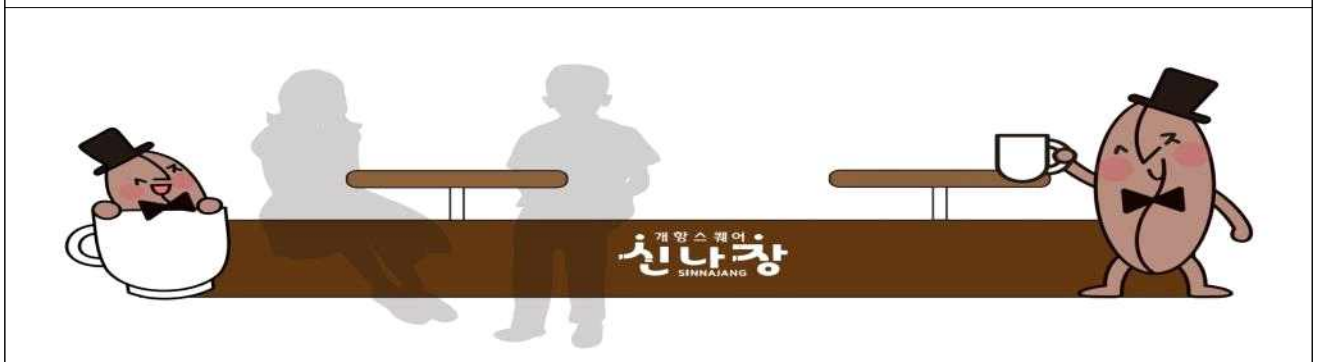
2.3 통합브랜드 ‘신나장’ 과 ‘신나프렌즈’ 를 활용한 사인물 디자인 고도화 및제작·설치



신나프렌즈



신나프렌즈 거리가구 디자인안 1



신나프렌즈 거리가구 디자인안 2

2.4 상권 안내 및 홍보 시스템구축

○ 위치 : 개항희망문화상권 전역

○ 주요과제

- WayFinding을 이용한 디지털 상권 안내 및 홍보시스템 구축
- 효과적인 예산 계획에 따른 배치 계획



< 디지털 안내체계 구축 예시 >



< 디지털 안내, 홍보 구축 예시 >

2.5 디자인 계획수립(Master Plan)

가. 사업지에 대한 경관조명 공간별 컨셉 디자인 설계 등

나. 주변 조명환경, 자연환경 등 현장여건에 맞는 구성, 연출 컨셉

- 예술성, 창의성, 심미성 고려

다. 시설물(조형물, 구조물, 시설물 등)의 경우 구조적 안전을 고려

- 구조기술사 검토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협의 후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명시

라. 관련 법령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연계·상호 반영한 디자인 및 설계 도출

마.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제시

○ 기본계획 수립은 주요 과업 수행을 위한 대상 장소 분석, 사례 조사, 기본구상 및 사업별 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 상권의 홍보 및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상징성 강화 및 상권으

- 로의 안내 유도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 계획을 수립 및 적용
- 법적 제한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 진행 시 법적 제한으로 인해 계획이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다양한 의견 수렴 후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확정적 부분에 대해 실시설계 완수

2.6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가. 각 공간 별 디자인 계획의 세부 고려사항

1) 계획의 방향

가) 사업의 특징, 기획의도를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이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창의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 ① 공공의 역할에 어울리는 스토리텔링을 갖춘 통합적이면서 세부적인 공간 계획
- ② 연령별 다양한 이용자가 사용하는 공간임을 이해하고 이용자의 방향을 명확히 제안
- ③ 각 공간별 용도와 기능이 충분히 반영된 공간구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적정규모와 배치계획 제시
- ④ 이용자 공간 및 동선 중심으로 이용 환경 구축
- ⑤ 공간별 다양성, 확장성을 고려한 기구 배치 및 디자인 구축

나) 설계 방향은 각 공간의 시설물 배치계획을 기준으로, 주변 건축물 시설물 디자인 개념과 색상 등이 통합된 체계 속에서 포괄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시설물 마감 계획을 보완하며 재료의 변경, 코디네이션 필요 부분 등 효과 증대를 위하여 건축 마감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제안할 수 있다.

라) 설계도면은 각 공간별 평면도, 전개도, 시공 상세도를 포함하며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획의 주안점

가) 기본설계

- ① 공간 계획 수립
- ② 공간별 기본설계
- ③ 공간 구획에 따른 재단 자산(집기류 등) 배치

나) 실시설계

- ① 건축설계도서의 공간 계획에 따른 실 구성을 기초로 공간별 설계
 - 사용 체계(용도, 동선, 관리시스템)와 운영프로그램에 연계된 공간의 기본설계
- ② 공간 구성에 따른 사인 디자인, 설치계획 및 설계

다) 실시설계 주안점

- ① 공간
 - 방문객의 접근성을 고려한 공간구성으로 계획
 -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고 각 구획 별 명확한 시각적 구분이 가능하도록 계획

라) 계획안은 각 공간의 디자인 개념과 색상 등이 통합된 체계 속에서 포괄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한다. 각종 설비 액세서리 등도 전체적인 디자인 개념 및 색상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3) 실시설계 시 기본 고려사항

가) 항시 개방에 따르는 중점 사항을 염두에 두어 절전형 조명을 고려한다.

나. 기본설계 세부지침

“기본설계”라 함은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 업무로서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1) 기본설계 용역수행 지침

가) 용역 수행기관은 각종 자문 및 협의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각종공법에 대하여 발주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기본설계는 기본개념이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므로 실현 불가능하거나 제 법규 규정에 저촉되어서 공사시행 불가능한 내용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각종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검토내용

① 계획(안)에 대해 발주처와 견해를 달리할 때에는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간 환경과 조화된 배치계획, 공간의 특성 및 기능, 편의성을 고려 한 평면계획 및 입면계획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③ 공간의 재료선정은 안전성,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유지관리, 색채 개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④ 마감 재료는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 면에서 유리한 질감, 색채 등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⑤ 공간의 가구, 특수시설 및 기구 등은 그 종류, 형태, 색채, 크기, 필요위치, 소요 개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 및 자료를 제시한다.

⑥ 모든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기본설계도서 작성

건축법제2조 14호, 동 시행규칙 제1조의2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5호 작성기준에 의한 도서

3) 공사비 산출

공종별 공사비(공종별 개략 물량 포함) 계산은 신빙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실제 소요공사비의 근사치가 되어야 하며, 공사비 산출은 아래와 같은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렇지 못한 것은 관련 계산근거 및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가) 공사비 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의 공사원가 계산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 나) 공사비 적산은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적산기준 등에 의거 산출한다.
- 다) 특수공정은 제조원가 계산서 양식에 따른 서식으로 3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합리적인 단가를 택한다.
- 라) 제조원가에 의할 수 없는 공정의 단가는 전문가의 견적단가로 계산한다.

다. 실시설계 세부지침

“실시설계”라 함은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이 도서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각종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설계를 근거로 실시설계에서는 설계기준 및 각종 조건을 분석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공사시공에 필요한 시방 및 규격서, 공사비 내역서, 실시 설계도서 작성 등의 세부 실시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세부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공통항목

- 가) 실시설계설명서(계획개요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나) 시설물의 부분상제도, 사인디자인 등을 포함한 설계도면
- 다) 시방서(일반 및 특기시방내용)
- 라) 설계 내역서(총괄표, 세부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포함)

2) 실시설계도서의 작성 지침

- 가) 설계도면과 도면 기호는 이해가 쉽도록 작성하며 A3크기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 다) 설계도서는 전문가(건축사)가 작성 및 날인하여야 한다.
- 라)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설계방법, 마감 재료의 종류

- 및 유형, 주요 설계조건,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 등을 한글로 기록한다.
- 마)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 바) 각 설계도는 더 이상 세부설계가 없이 시공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히 표현되도록 하며 미적 감각을 도입하여 설계하고 구체적인 재료와 특성이 표시된 도서를 작성하여 완벽하게 설계한다.
 - 사) 각 설계도는 관련법규 및 발주처의 공사시행 과정을 참조하여 분야별로 구분 설계하여야 하며 각 분야별 법규 및 규정, 기준에 적합해야한다.
 - 아) 모든 도면은 CAD 또는 AI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는 USB에 제출한다. (USB 제출시 PDF 파일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한다)
 - 자)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모든 도면은 전자화된 형태로 작성한다.

라. 공사시방서

- 1) 시방서는 일반사항 및 특기사항 등 도면에 의한 시공, 시방 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며 공사시방서 작성 시는 별도의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 2)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하며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 3)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4)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 5)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 6) 현실적으로 시공이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 7)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 8)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 9) 설계 시 시공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수량산출조서, 공사비내역서, 일위대가표

- 1) 수량산출조서는 적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정확히 작성한다.
- 2) 공사비내역서 및 일위대가표는 건설표준품셈에 의하고 자재 단가는 국내에서 공인받은 물가조사 기관의 월보에 의하되 특수한 것은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첨부 최소금액으로 하고, 노임은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보고서(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하여 작성한다.
 - 노임기준은 당해 연도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으로 한다.
 -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최저가격을 적용한다.
 - 품셈은 당해 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 조사,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당채 물품의 거래가격 현장조사를 실시,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 내역서 비고란에는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 근거를 기록할 것
 -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 3) 수량 산출은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한다.

바. 공사 공정표

- 1) 각 공종별로 단일화 시켜야 하며, 이 공종들의 상관관계를 경로와 날짜가 나타나도록 공정표를 작성한다.(공정을 월별, 누계치를 표시)
- 2) 특수공정은 작업의 시작과 종료 시점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명칭을 기입하여야 한다.
- 3) 총 공정 일정은 실제 공사시행에 적용할 수 있는 자연적, 지리적, 인

위적 요소가 감안된 일정이어야 하며, 휴일은 일정에 산입한다.

사.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 1) 과업수행 중 설치하는 일체의 시설물의 경우 기본디자인(안)에 대한 발주처 승인 이후 실시설계가 완료된 도면에 의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제작·설치 시행해야 한다.
- 2) 설치 시설물의 안전성, 내구성 등 제반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 조형물의 주재료는 옥외 설치를 고려하여 야외 환경에서 장기간 견딜 수 있도록 견고성, 내구성, 구조적인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 유지보수 및 관리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및 제작한다.
 - 시설물로 인하여 이용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모든 재료는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써 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표준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3) 불법광고물 등 철거폐기물 처리
- 4) 각종 민원 발생 시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 5) 강풍·강우·강설에 대한 안전대책, 인적·물적 피해 방지대책 수립
- 6) 과업기간 중 설치된 모든 시설물의 제작·설치 이후 A/S방안 (유지보수 기간 등)

아. 기타

- 1) 획일적인 디자인은 지양하고, 수립된 마스터플랜에 부합하는 디자인 기본방향 및 목표에 부합하는 디자인 개발
- 2) 디자인(안)을 통한 권역별, 구간별 세부 시물레이션 제시
- 3) 디자인(안)의 실현 및 구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 4) 기본계획을 토대로 한, 구체적인 대안 작성(기반, 시설, 포장 등)

2.7 인·허가 절차이행

- 인·허가 과정 보완, 검토 요구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과업과 관련한 행정절차는 관계기관에 협조

3. 보고회 및 보고서 작성

- 과업수행자는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하여야 함
- 계약 종료 후 14일 이내 제출
- 관련 증빙 사진(사진은 별도 정리를 통해 제출)
- 한글 파일로 작성 제출

번호	항 목		규격	부수	제출 시기	비고
1	착수계		A4	2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
2	설계도면	설계도면 (평면·단면·입면·천장 및 기타 상세도) 주요부 자재일람표 기타 발주처에서 요청한 사항	A3 A4	5	최종 제출시	공사에 수반되는 전기 통신소방 폐기물 처리 등 일체를 고려하여 설계
3	공사비 산출내역	산출내역서, 관급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 산출조서 수량 산출조서	A4	5		
4	시방서	시방서(각 일반 및 특기)	A4	5		
5	보고서	최종보고서 (디자인 및 공사개요, 기본·실시설계 설명서 및 각종 자재 선정사유 설명서)	A4	5		
6	전자파일	도면(CAD/PDF) (상기 착수계~보고서 내용) 일체 저장 파일	USB	2		

1. 일반사항

가. 일반적 준수사항

- 본 과업목적과 추진방향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성 높은 계획을 수립한다.
- 건축과 관련된 구조나 기타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유지관리, 보수 등이 용이하고 관리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및 제작·설치해야 한다.
- 콘텐츠 적용시스템 및 관련 설비 등은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한 후 반영해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 상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범위에 대해 발주처와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 모든 과업은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 신고서(용역수행 예정일정표)와 본 용역에 임할 책임 건축사 및 공종별 기술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설계를 추진하되 과업 진행 전반에 걸친 사항을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을 설계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업무담당자가 작업성과를 분석, 검사하는데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처 및 감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 각종 조사 작업, 설계도서 작성에 있어 업무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각종 조사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수행 중 또는 설계서 납품 후에도 설계내용에 관하여 일체의 보안 유지 책임을 지며 별도로 제공한 자료는 반환 또는 업무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4. 4.30. 이내로 한다.

나. 손해배상 등

- 계약상대자는 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관리를 철저히 기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귀책 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 사유 입증 증명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와 제3자에게 본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처에 바로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대상자는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 진행 중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설계진행중 또는 완료 후 본 설계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및 서류는 용역완료 5일전까지 발주처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토록 하고 용역완료 후에도 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수량누락 등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타 설계과업지시 및 계약조건에 없는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다. 계약의 해지 등

- 발주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주처의 손해(신뢰실추, 손해배상 등)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하면서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
-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 해지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는 본 용역계약의 해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의법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업무협의를 및 보완 등

- 계약상대자는 사업진행 시 정기적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문제점 발생 시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협의가 필요한 주요사안의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 용역수행 중에 발주처가 요구하는 내용은 과업에 추가로 반영토록며, 특히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취지에 맞도록 과업을 실시하고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논의되고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인력 구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이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발

주치의 용역보완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이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치의 감사 수감 등에 따른 자료 요청 등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성실히 감사 수감에 따른 응대를 한다.

마. 보안유지

- 계약상대자는 과업참가자의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한다.
- 본 용역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설비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 및 참여인력은 발주치의 승인 없이 사업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발주치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치의 보안 요청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특허권 및 저작권의 사용

- 사업 기간 중 사업비를 사용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유무형 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 등은 발주처에 있다.
- 본 용역을 수행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3자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결과물에 대해 발주처는 정책상 필요 시 임의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사. 기타사항

- 본 용역 진행중에 본 용역과 관련한 발주처의 재검토 및 보완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자로서 제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자구의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한다.
- 용역수행 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 중 수행기관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수행기관이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한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 이 계약에 대한 소송은 발주처의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발주처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인건비 등은 타 비용에 우선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 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비 집행내용에 대한 사업비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14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2. 과업의 세부지침

-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한다.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상이 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해야 한다.
- 제작·설치단계에서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제시기준(사양)보다 고급사양이 출시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납품일 기준 최신 사양으로 대체한다.
- 작동이나 체험관련 콘텐츠의 작동장치는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

- 과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제작해야 하며 사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작과정 전반에 대하여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 모든 관련 자료(영상, 사진, 데이터, 그림 등)를 확보하고 제안내용 등이 특허권, 저작권 등과 관련 있을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의 확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이 발생할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모든 시설(물),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되고 친환경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내화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설계 및 제작·설치해야 한다.
 -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시설물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작·설치 수행에 있어서 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해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성·설치해야 한다. 발주처로부터 재제작·설치, 제작·설치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위배하여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재시공 또는 보완해야 하며, 발주처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재시공 또는 보완 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다른 방법에 의해 제거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 제안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사업 수행 중 설치해야 될 사항, 누락된 사항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물),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하며, 사용자의 안전 확보 및 훼손(파손) 등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콘텐츠 구성 및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각 공간을 차별화시켜야 한다.
- 도입주제별로 공간을 구분하거나 향후 콘텐츠 교체 등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공간구획 및 조정이 용이하도록 조성해야 한다.
-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 관람객의 특성과 관련 법규 등을 고려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청각, 시각 등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간 차폐, 차음, 차광 등을 통해 쾌적한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 공간 내 패널, 모형 및 기타 시설의 색채와 디자인을 통일성 있는 이미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 모든 자재는 소방법 등 관련 법규에 맞는 자재를 사용해야 하고 스프링클러 작동 등을 대비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건축 부분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법규상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 진출입로 접근이 용이하고 피난동선 확보 및 비상 탈출이 용이하도록 시설물과 사인물 등을 적소에 설치해야 한다.
- 기타 공간을 최적화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조성해야 한다.
- 주제에 적합하고 이를 표현하기 위한 최적화된 매체와 기법을 도입하여 관람객에게 이해도를 높이고 흥미와 재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작·설치해야 한다.
- 실물, 모형, 3D동영상, 키오스크, VR콘텐츠 및 인터랙티브 콘텐츠 등 다양한 기술과 연출기법이 적용된 콘텐츠로 구성 및 제작·설치해야 한다.
- 충분한 자료 조사와 근거를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 방향을 설정하고 반드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청취 후 이를 받드

- 시 반영해야 하며 발주처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제작·설치해야 한다.
- 콘텐츠는 설치장소, 규격, 하중, 보조시설 등 건물과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작·설치해야 한다.
 -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 및 감수를 거쳐 관람객의 흥미와 관심도를 고취시키고 가독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및 제작해야 한다.
 - 외국인 관람객의 관람 편의를 위해 한글, 영어 등 최소 2개 이상의 언어로 제작해야 한다.
 - 콘텐츠 제어가 용이하도록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시 수시로 콘텐츠를 업그레이드 및 수정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 최적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조명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하고 관람객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며 콘텐츠 간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 각종 H/W 장비는 구매 전 제품의 성능과 사양서를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구매하고 장비 유지관리 메뉴얼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 각종 H/W 및 콘트롤러 등 관련 해당 운영프로그램 등은 항상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수정, 저장 등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 천장에 설치되는 콘텐츠의 경우에는 하중과 내구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락 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자체 발열이 발생하는 모니터, 프로젝터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환풍 및 통풍을 고려하고 온도상승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조물을 제작·설치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ISO의 OSI 표준규격, IEEE802.3 국제 표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 시행령, 기타 시스템 및 장비와 관련된 법규

등을 준용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축부분과 면밀히 협력하여 추진해야 한다.

- 유지관리와 관련되어 필요한 장비, 자재 등은 신뢰성,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는 정품 및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으로 일괄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 제작 및 시험운행 과정 중 주요 부적합사항이 발견될 경우 발주처에 보고 및 승인을 받은 후 수정 또는 교체 조치해야 하며, 결과가 합격된 경우에도 사업자는 결함 및 성능불량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필요 장비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여 기술해야 한다.
- 원활한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유지보수(교체, 정비) 및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 등을 위한 메뉴얼을 작성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주기 등을 산정하여 제시해야 한다.
- 각종 장애 및 하자 발생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 인력지원체계 및 세부 운영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본 사업에 대한 무상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기간을 제시해야 한다.
-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 및 하자 발생 시 긴급 대응을 위해 메뉴얼을 작성 제시하고 관리자 및 사용자 등으로 구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조성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를 선정하여 발주처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다.
- 발주처는 조성 과정 중 필요한 경우 콘텐츠 변경 및 공간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사업자는 계약금액 내에서 발주처의 지시 및 요구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준공 후에라도 사업 목적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될 경우 발주처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보완·수정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법령 등에 의한 관련 인허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를 위한 소요비용과 관련 법령 등의 저촉 및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